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2년 7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2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안 제3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안 제5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남섭)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과 그 내용 공개와 관련한 내용을 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창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부.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 2항에 따라 평창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사,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제4조(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및 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업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책 이력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수행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평창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7개 항목 중 택 1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군이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 ▪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치체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 제62조의5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평창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제목 기재)	`00. 00. 00.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과장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팀장 <input type="checkbox"/> ○○○ 주무관
○ 내용	`00. 00. 00.	<input type="checkbox"/> ○○○ 군수 <input type="checkbox"/> ○○○ 부군수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국장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과장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팀장 <input type="checkbox"/> ○○○ 주무관

[기재 항목]

-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당자: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6개 항목 중 택 1
-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최종 결재일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7. 0.>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귀하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연락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의 접수·처리 및 사후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3년 보유 후 파기

※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신고의 접수·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처리절차



유의사항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